

제 호

임명장

소속
성명
생년월일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0조의3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
년 월 일까지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함

년 월 일

질병관리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
·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